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대출종류										⑤차입금상환기간 (거치기간포함)					~ (상환기간 : 년)				
⑤-1 상환유형	공제 한도	1,500만원	[ ] 고정금리		차입금 / 고정금리방 식 차입금					(상환기간 / ) 고정금리이자 지급기간 :									
			[ ] 비거치식		차입금 / 비거치식 분 할상환 방식 차입금					상환기간연수(1년만 기간은 1년으로 봄) :									
		500만원	[ ] 기타		해당 연도 상환 차입 금														
⑥주택취득일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										⑦저당권설정일					⑧주택면적    전용면적    m <sup>2</sup>				
⑧-1 주택 물건지																			

### (            )년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현황

⑨월별	⑩상환일자	⑪이자	⑨월별	⑩상환일자	⑪이자
1			7		
2			8		
3			9		
4			10		
5			11		
6			12		

⑫연간합계액	사용목적	특별공제 신청용
⑬소득공제대상액(⑫ 또는 ⑬)		

금융기관간 직접 상환하는 형태로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한 경우 및 상환기간을 연장(전환)하는 경우 아래의 ⑭ ~ ⑰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전(연장, 전환)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내역			⑰이전(연장, 전환)당시 해당 금융회사에서 차입한 금액	⑱연장, 전환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주택분양권의 가액)	⑲소득공제대상액 [ ⑫×(⑱/⑲)과 1 중 적은수 ]
⑭금융회사명 (접포명)	⑯상환기간 (거치기간포함)	⑰차입금의 원금잔액			
	~ (상환기간연수:    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택자금공제 요건을 갖추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위와 같이 상환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금융회사 등의 장) (서명 또는 인)

### 작성 방법

1. ④ 대출종류란에는 무주택자의 중도금대출, 기존주택구입, 주택분양권 대출 여부를 적습니다.
2. ⑤ 차입금상환기간란에는 해당 차입금의 약정에 의한 최초 차입일과 최종상환 예정일을 적습니다.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 최초 차입일과 최종 상환일을 적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중도상환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3. 해당 금융회사 등에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사람이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별도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해당 금융회사로 이전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 이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증명서를 별도로 발행하여야 합니다.